

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2 일
상속인	① 성명(대표자)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:)		
피상속인	④ 성명(대표자)		⑤ 주민등록번호	
	⑥ 주 소	(전화:)		
⑦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				
⑧ 터미널의 명칭				
⑨ 위치				
⑩ 상속일자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
※ 첨부서류 1.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				수수료
				3,000 원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